식의약 법률 제·개정 알림('23.6.13. 공포)

	법률명	법률안 주요내용	시행일	담당부서 (연락처)
1	**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**	○ **자동 수입신고 수리** 근거 마련	'23.9.14.	**수입식품정책과 (043-719-2168)**
		○ **동물성 식품**(축산물이 아닌 동물의 식육·원유·알 및 그 가공식품)의 **수입위생평가** 도입 ○ **직접구매 해외식품**등에 대한 **구매검사** 및 소비자의 구매·사용 실태, 피해사례 등에 대한 **실태조사** 근거	'24.6.14.	
		○ 수출식품 **안전성 지원업무 확대** * (현행) 국내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 → (개정) 기존 + 수출업소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등	'23.12.14.	
2	**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**	○ **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항목의 기입 위반**에 대한 **벌칙(1년, 1천만원) 규정 마련** * (현행) 마약에 대해서는 벌칙(2년, 2천만원 이하) 규정이 있으나, 향정의 경우 의무는 있는 반면 벌칙은 부재	'23.9.14.	**마약정책과 (043-719-2801)**
		○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**투약내역 확인 의무화**(위반시 과태료 처분), 단,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* (현행) 환자 투약내역 확인 가능(재량)	'24.6.14.	
3	**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**	○ **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** 및 식약처장의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**가이드라인 마련** 근거 ○ 점자(코드)표시 등과 관련한 식약처장 행정적 **지원 근거**	'23.12.14.	**식품표시광고 정책과 (043-719-2182)**
4	**의료기기법**	○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**점자 및 음성.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 권장**하고, 표시하려는 **영업자 대상 행정적·기술적** 지원 근거 ○ 식약처장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**표시 개발·교육·홍보**하고, 이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**위탁**	'24.6.14.	**의료기기정책과 (043-719-3756)**

	법률명	법률안 주요내용	시행일	담당부서 (연락처)
5	**위생용품 관리법**	○ 칫솔, 치실 등 **구강관리용품**을 **위생용품**에 포함 * (현행) 「구강보건법」에 따라 복지부 소관 ○ **문신용 염료**를 **위생용품**으로 관리 * (현행) 「화학제품안전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 소관	'25.6.14.	**위생용품정책과** **(043-719-1739)**
6	**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**	○ **국내시험검사기관**의 **지정 유효기간**을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(4년)과 동일하게 **1년 연장** * (현행) 3년 → (개정) 4년	'23.6.13.	**시험검사정책과** **(043-719-1805)**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law.go.kr) 또는 관보(https://gwanbo.go.kr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◎ 동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법률 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